

의안번호	2212812
의 퇴 인	장철민 의원
회 답 일	2025.9.18.
추 계 번호	25B46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80만원, 2031년 28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400만원(연평균 28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안 제161조의3)	2.8	2.8	2.8	2.8	2.8	14.0	2.8

주: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1조의2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산업재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제1항) 1. 동시에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2. 해당 산업재해 발생일 이전 1년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로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기업의 규모, 매출액,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의 정도, 산업재해 발생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기소 내용을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함.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소 내용 확인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3항)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위반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협의가 된 경우 2. 제1호에 따른 통보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해당 사건 기소장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제4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16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함(제5항)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됨(제7항)	
2	안 제161조의3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6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61조의2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신설	—	- 미대상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¹⁾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음

1)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	안 제161조의3 (과징금부과심의 위원회) 신설	○	• 공식추계 - 본문 내용 참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움
 - 이에 본 추계서는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규모를 현행 임금채불정보심의위원회²⁾의 사례를 토대로 추계
 - 참고로 임금채불정보심의위원회는 상습·고액 채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통해 임금채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채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함

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2)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③ 제1항에 따른 채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민간위원 수) 7인³⁾
- (회의개최 횟수) 2024년 고용노동부 소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현황을 참고하여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회의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⁴⁾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2]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비용추계: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7	7	7	7	7	—
회의개최 횟수(B, 회)	2	2	2	2	2	—
회의참석사례금(C, 만원/명·회)	20	20	20	20	20	—
추가재정소요(D=A×B×C, 만원)	280	280	280	280	280	1,400

주: 1.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80만원, 2031년 28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400만원(연평균 280만원)으로 추계됨

3)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명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험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4)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5.p.222.)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안 제161조의3)	2.8	2.8	2.8	2.8	2.8	14.0	2.8

주: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